

벤처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우리 대학에 설치한 벤처대학원<Graduate School of Venture>(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 제2조 (교육목표)** 대학원은 벤처 학문의 체계화, 벤처 전문 컨설턴트의 양성, 벤처창업지도자 양성, 산학 연구개발 추진, 해외 창업 및 투자 지도 전문가 양성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룩하여 국가와 세계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 제3조 (설치과정)** 대학원에는 석사·박사학위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제3조의 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은 국내 및 해외에서도 가능하다.
-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3. 1, 2014. 4. 21, 2015. 1. 26, 2017. 9. 1, 2018. 3. 1, 2019. 2. 26, 2019.10.28., 2021.9.15.)
- 제5조 (수업방법)** ①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0. 3. 1, 2018. 3. 1)
- ② 설강 과목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 학부, 대학원 및 학점교규 협정을 맺은 타 대학원 강의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3. 1)

제 2 장 입 학

- 제6조 (입학시기)** 대학원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및 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7조 (입학전형회수)**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 신입생을 선발한다.
- 제8조 (입학지원 자격)**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석사학위 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 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석·박사 통합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이상 취득예정자
 - 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한 자
 - ① <삭제 2014. 4. 21>
 - ② <삭제 2014. 4. 21>
- 제9조 (지원절차)**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입학전형)** ①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한 자 중 대학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분야에 충분한 연구 및 사업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원전공분야) 대학원의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전공학과와 계열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21)

제12조 (입학의 취소)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8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수업, 학점 및 수료

제13조 (수업연한) ①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은 최소 2년(4학기)으로 한다.

②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최소 3년(6학기)으로 한다.

제14조 (재학연한)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 과정은 3년(6학기), 박사학위과정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입학자의 경우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대학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교과과정) 대학원의 각 과정의 교과과정의 편성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21, 2015. 1. 26)

제16조 (합동강의) 대학원의 교과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우리대학의 타 대학원과 합동강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강의) 대학원의 설강과목 중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가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재학생의 전공분야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대학교에 강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학사과정자의 대학원수강) 학사과정 재학 중 여유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을 이수할 시 이를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학점은 학사과정의 이수학점에는 포함될 수 없다.

제19조 (개인연구과정) 우리 및 타 대학 혹은 관련전문기관에 개인연구과정으로 개별연구과목을 설강할 수 있다. 개인연구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수강신청) <삭제 2014. 4. 21>

제21조 (과정이수 학점)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은 27학점,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9학점으로 한다. 단, 논문지도 및 학과별 필요에 따라 석사는 6학점, 박사는 9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제22조 (취득학점 인정) 대학원 학생이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과목이 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성적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한다.

제23조 (매학기 이수학점) 대학원 학생은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하에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수강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A0이상인 자

2. 석사과정 3학기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자중 학위논문대체 학점이수를 희망하는 자 (개정

2015. 1. 26., 2021. 9. 15.)

제24조 (시험) 대학원의 시험은 매학기 말 그 학기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두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성적등급) ①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점
A ⁺	95 ~ 100	4.5
A0	90 ~ 94	4.0
B ⁺	85 ~ 89	3.5
B0	80 ~ 84	3.0
C ⁺	75 ~ 79	2.5
C0	70 ~ 74	2.0
F	70 미만	0.0
I	성적 유보할 경우 임시 부여	0
P	합격(통과)	×

② 성적제출 마감일까지 학업 성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I(성적미확정)학점을 부여하여 성적표를 제출하고 당해 학기 내에 확정된 학업성적 등급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학기 내까지 성적평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I학점은 F로 확정 처리함.) (신설 2010. 3. 1, 2017. 9. 1)

제 4 장 학위종류 및 수여

제26조 (수료 및 졸업)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 및 졸업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는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서(별지 서식 3)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제27조 (학위종별) 대학원에 수여하는 석사, 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 단, 학위종별의 적용은 학생의 입학년도의 학칙을 적용하되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014. 4. 21, 2015. 1. 26, 2017. 9. 1, 2018. 3. 1, 2019. 2. 26, 2019.10.28., 2021.9.15.)

제28조 (학위수여) ① 총장은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석·박사학위(전문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논문이 있는 경우)·제1호의1(논문이 없는 경우)·제1호의2(영문) 서식에 의하고, 박사학위는 별지 제2호·제2호의1(영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수여한다. (개정 2015. 1. 26, 2019. 2. 26)

제 5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자퇴, 재입학 및 학과변경

제29조 (등록)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하며,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6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 (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휴학) 휴학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제3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3. 1]

제32조 (복학) 대학원 학생은 복학은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1)

제33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이를 제적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1.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개시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5.12.23)
2. 매 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12.23>
4.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대학원위원회가 확인하고 징계를 의결한 자.(개정 2015.12.23)

제34조 (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4. 21)

제35조 (재입학) ① 제적 후, 10년 이내인 자가 원적 학위과정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1)

② 재입학 허가는 동일학생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소속학위과정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36조 (편입학) 대학원의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 (학과변경) ① 학과 변경한 자의 기 이수학점은 변경된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②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2학기 등록 전 1회에 한하여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제38조 (학과변경 절차) 학과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과(전공) 변경원(소정양식)
2. 신·구 학과장의 승인서
3. 변경 전, 학과 이수학점의 성적 증명서
4. 변경 후, 학과 졸업학점 인정서

제 6 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및 특별입학

제39조 (공개강좌)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및 연구 상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0조 (연구과정) ① 대학원은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②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별지서식4)를 교부할 수 있다.

제41조 (특별입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추고 대학원에 입학할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위탁학생
2.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교육과정 학생

제 7 장 장학금 및 연구비

- 제42조 (장학금, 연구비)** ① 대학원생으로 우리 대학의 건학정신이 투철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직제 및 위원회

- 제43조 (직제)** 대학원의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4조 (지도교수)** 개별학생의 학사 및 연구와 논문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 제45조 (대학원 위원회의 구성)** 대학원에는 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위원회는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 제4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6.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48조 (소집 및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9조 (산학협동위원회)** ① 벤처대학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 26)
 ② 산학협동위원회 직제 및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 제50조 (학위수여 규정 및 시행 세칙)** 대학원의 학위수여 규정 및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 제51조 (준용 조항)**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의 학칙 및 일반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 제52조 (세칙)** 본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이 학칙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학위수여 경과조치) 2008학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8)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15)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과와 정원 (개정 2019. 2. 26, 2019.10.28., 2021.9.15.)

2020학년도 벤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제4조관련)

구분	계열	학과	분 야	입학정원(단위:명)		
				석사	박사	계
아산	사회	벤처경영	벤처경영 복지경영 문화예술경영 부동산경영 리더십 기술경영	0	0	0
		정보경영	융합서비스경영 금융정보경영 농산업시스템경영 빅데이터경영 콘텐츠비즈니스경영			
	공학	융합공학	ICT융합 사이버보안 바이오융합산업 환경보건에너지공학	7	0	7
서울	사회	벤처경영	벤처경영 복지경영 문화예술경영 부동산경영 리더십 기술경영	24	61	85
		정보경영	융합서비스경영 금융정보경영 농산업시스템경영 빅데이터경영 콘텐츠비즈니스경영			
	공학	융합공학	ICT융합 사이버보안 바이오융합산업 환경보건에너지공학			
계				31	61	92

<별표 2> 학위의 종별 (개정 2019. 2. 26, 2019.10.28., 2021.9.15.)

벤처대학원 학위종별표

계열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사회	벤처 경영	경 영 학 석 사 (벤 처 경 영)	경 영 학 박 사 (벤 처 경 영)
		경 영 학 석 사 (복 지 경 영)	경 영 학 박 사 (복 지 경 영)
		경 영 학 석 사 (문 화 예 술 경 영)	경 영 학 박 사 (문 화 예 술 경 영)
		경 영 학 석 사 (리 더 십)	경 영 학 박 사 (리 더 십)
		경 영 학 석 사 (부 동 산 경 영)	경 영 학 박 사 (부 동 산 경 영)
		경 영 학 석 사 (기 술 경 영)	경 영 학 박 사 (기 술 경 영)
	정보 경영	경 영 학 석 사 (용 합 서 비 스 경 영)	경 영 학 박 사 (용 합 서 비 스 경 영)
		경 영 학 석 사 (금 융 정 보 경 영)	경 영 학 박 사 (금 융 정 보 경 영)
		경 영 학 석 사 (농 산 업 시 스템 경 영)	경 영 학 박 사 (농 산 업 시 스템 경 영)
		경 영 학 석 사 (빅 데 이 터 경 영)	경 영 학 박 사 (빅 데 이 터 경 영)
		경 영 학 석 사 (콘 텐 츠 비 즈 니 스 경 영)	경 영 학 박 사 (콘 텐 츠 비 즈 니 스 경 영)
공학	융합 공학	공 학 석 사 (I C T 용 합)	공 학 박 사 (I C T 용 합)
		공 학 석 사 (사 이 버 보 안)	공 학 박 사 (사 이 버 보 안)
		공 학 석 사 (바 이 오 용 합 산 업)	공 학 박 사 (바 이 오 용 합 산 업)
		공 학 석 사 (환 경 보 건 에 너 지 공 학)	공 학 박 사 (환 경 보 건 에 너 지 공 학)

(별지 제1호 서식) 벤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이 있는 경우)(개정 2019. 2. 26)

석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벤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석사(전공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석사(전공분야)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석)○○○

(별지 제1호의1 서식) 벤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이 없는 경우)(개정 2019. 2. 26)

석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벤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석사(전공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석사(전공분야)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석)○○○

(별지 제1호의2 서식) 벤처대학원 석사과정 영문학위기(개정 2019. 2. 26)

HOSEO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Master of ○○○
in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this ○○ day of ○○, ○○○○

○○○

Dean, Graduate School of
Venture

○○○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별지 제2호 서식)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개정 2019. 2. 26)

박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박사(전공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박사(전공분야)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박)○○○

(별지 제2호의1 서식)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영문학위기 (개정 2019. 2. 26)

HOSEO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this ○○ day of ○○, ○○○○

○○○

Dean, Graduate School of Venture

○○○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별지서식 3) 대학원 수료증서

제0000-0000호

수료증명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입 학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원 및 과정 : 벤처대학원 (과정)
학 과 및 전공 : 학과
수료년월일 :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호 서 대 학 교 총 장

(별지서식 4) 대학원 연구실적 증명서

제0000-0000호

증명서

성명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학과(분야) 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장 ○ ○ ○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 ○ ○